

# 2025년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부산) 신규 상주기업 모집 공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성장지원센터(부산)에 입주할 상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5.07.1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 I. 모집 개요

---

### 사업목적

- 창업 공간과 성장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의 (예비)사회적기업 진입과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 모집유형 : 상주기업

- \* 상주기업은 성장지원센터(부산) 멤버십 회원기업이어야 신청가능하므로, 기존 멤버십 회원기업이 아닌 경우, 상주공간 신청 시 멤버십 회원기업 가입 신청 필수

### 모집규모 : 6개소

- \* 모집정원 초과 시, 예비 순위 지정하여 추후 공실 발생 시 전용공간 배정

□ 모집대상

- 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 포함)
-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할 계획을 가진 사업자(법인·개인사업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팀으로서, 1년 이내 법인 설립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을 명확히 보유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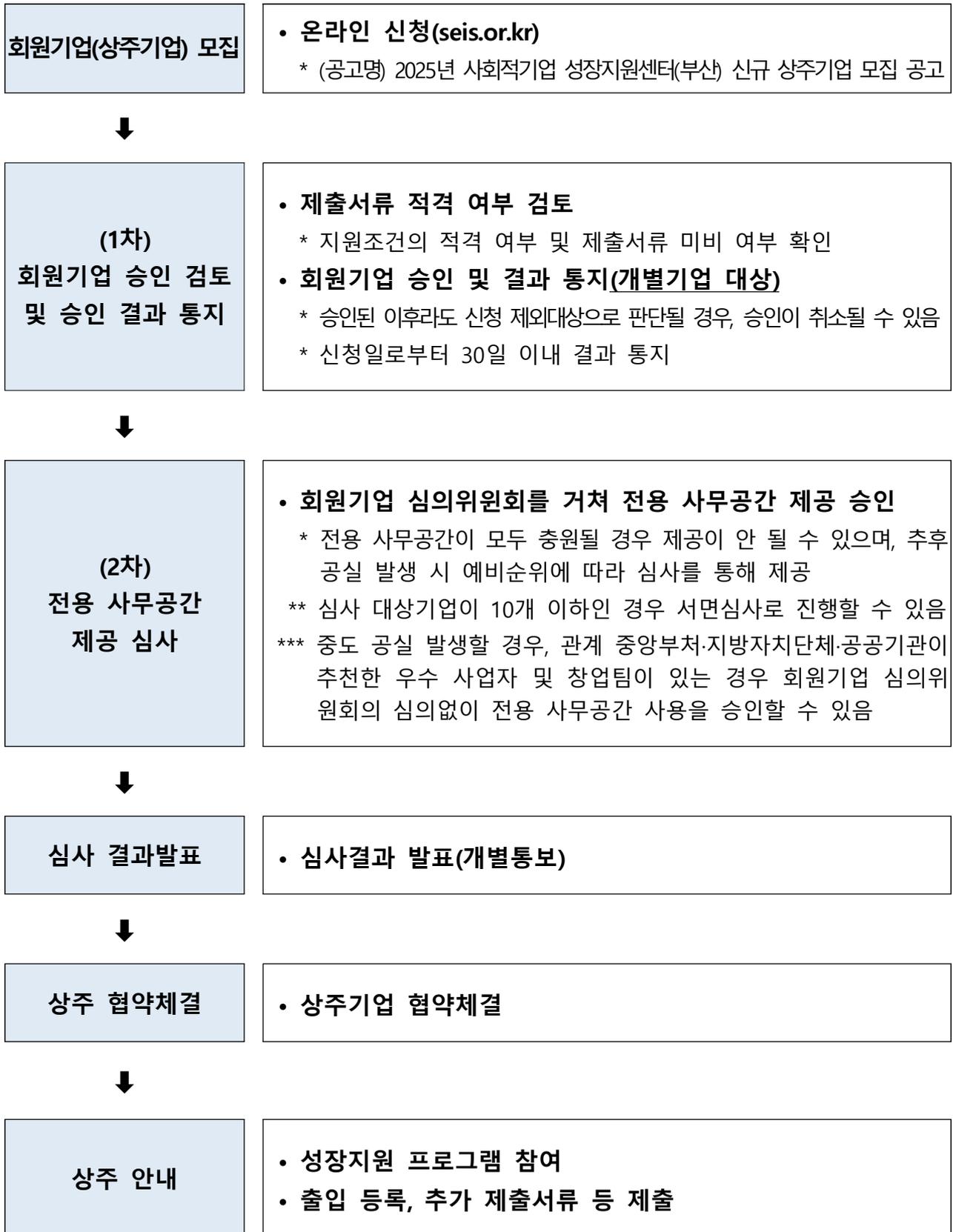
□ 모집제외(참여불가) 대상

- 중도포기, 지원중단으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현재 참여제한 중인 제재대상인 경우
-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동일 목적 기관에 중복하여 상주한 경우
- 휴·폐업 상태인 경우
- 허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이 종료(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기업
- 그 밖에 진흥원장이 멤버십 가입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상주기간 : 최초 상주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

\* 상주 기간 종료 시점 연장 신청 시 심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1년 연장 가능

□ 선정 절차



\* 전용 사무공간 제공 관련 심사 개최 일정 등은 추후 신청기업에 개별 통지

## II. 지원내용 및 의무사항

### □ 창업지원 공간 제공

○ **공용 비즈니스 공간**(회의실, 라운지), **공용 OA장비**(복합기 등) 제공

\* 전용 사무공간(지정석)의 경우, 최대 4인이 사용가능한 공간으로 구성되어있음

<성장지원센터(부산) 공간 현황>

<b>구분</b>	<b>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부산)</b>
<b>주소</b>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88, 5-6층 소셜캠퍼스 온 부산
<b>이용시간</b>	주중 09:00 ~ 18:00 * 주말·공휴일 사용 희망 시 운영지원실 협의 필요
<b>출입방법</b>	출입문 지문인식시스템 활용



소셜라운지



전용 사무공간

### 시설사진



화상회의실



중회의실

## □ 성장지원 프로그램 제공

- (상담 및 멘토링) 경영·회계·세무·법률 등 회원기업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상시상담과 멘토링 제공
- (교육)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하고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역량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
- (협업) 회원기업 및 지역 사회적기업과 상호교류·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 프로그램 제공
- (자원연계) 진흥원 및 지역 내 다양한 민간·공공기관 자원을 연계하여 회원기업의 실질적인 성장과 역량 강화 지원

## □ 회원기업(상주기업) 준수사항

- 전용 사무공간 신청서에 기재한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
- 센터에서 운영하는 성장지원 프로그램 적극 참여
- 모집 공고, 지침 및 협약 세부 관리기준 숙지와 준수
- 회원기업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참석 및 의견교류
  - \* 회원기업별로 1인 이상 참여(대표자 외 타 직원 참석 가능)
- 센터의 성과 점검·평가에 따른 회원기업의 고용인원, 매출액 등 자료 제출
- 기타 진흥원장이 정하는 요청하는 사항의 성실한 이행
  - \* 센터 내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시정하지 않는 경우, 회원기업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 그 밖에 진흥원장이 경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고 조치(누적 3회 시 멤버십 회원기업 강제탈퇴)

### Ⅲ. 신청방법 및 일정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5. 8. 8.(금) 18:00까지

\* 모집정원 미달될 경우, 연장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사회적기업 포털-통합사업관리시스템)

<전용 사무공간 사용 신청 경로>

① 사회적기업 포털(www.seis.or.kr) → ② 로그인(기업회원) → ③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④ 성장지원센터 → ⑤ 입주관리 → ⑥ 입주신청 → ⑦ 참여할 공고\* 선택 → ⑧ 공고 선택 후 "신규" 신청 → ⑨ 신청서 작성 및 첨부자료 등록 → ⑩ 최종 제출  
\* 공고명: 2025년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부산) 신규 상주기업 모집 공고

□ 신청서류

구분	연번	신청서류
공통	1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멤버십 신청서(별표1)
	2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전용 사무공간 신청서(별표2)
(예비)사회적기업	3-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3-2	사업자등록증 사본
	3-3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3-4	재무제표(2024년 결산자료)
(예비)사회적기업 진입 계획을 가진 법인사업자	4-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4-2	사업자등록증 사본
	4-3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4-4	재무제표(2024년 결산자료)
	4-5	사업자 소개서(자유양식, 10페이지 이내)
	4-6	사회적경제 관련 창업 프로그램 및 교육 이수 증명서(해당 시)
	4-7	관계부처 등 유관기관 추천서(해당 시)
(예비)사회적기업 진입 계획을 가진 개인사업자	5-1	사업자등록증 사본
	5-2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5-3	재무제표(2024년 결산자료) 혹은 매출 증빙 자료
	5-4	사업자 소개서(자유양식, 10페이지 이내)
	5-5	사회적경제 관련 창업 프로그램 및 교육 이수 증명서(해당 시)
	5-6	관계부처 등 유관기관 추천서(해당 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팀	6-1	창업팀 소개서(자유양식, 10페이지 이내)
	6-2	사회적경제 관련 창업 프로그램 및 교육 이수 증명서(해당 시)
	6-3	관계부처 등 유관기관 추천서(해당 시)

※ 첨부서류는 "기업명\_서류명"으로 저장하여 업로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 제출

## IV. 기타사항 및 문의사항

---

### □ 기타사항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회원기업 승인 및 전용 사무공간 제공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상주기업은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회원기업이어야 신청 가능
  - \* 기존 입주기업(회원기업)이 아닌 경우 상주기업 신청 '전용 사무공간 신청서'와 함께 '멤버십 신청서' 필수 제출
- 센터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상주하고자 하는 센터 1개소만 신청
  - \* 2개 센터 이상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 해당 신청에 대한 무효 또는 선정 취소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 있음

### □ 문의사항

- (전산 관련)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1661-4006
- (신청 관련)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부산) 운영지원실  
051-753-2506, 2510, [sc15@ikosea.or.kr](mailto:sc15@ikosea.or.kr)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전용 사무공간 심사표**

신청기업명		대표자	
평가일	20 . . . . .	평가위원	(서명)

심사항목	심사결과						
	배점	심사점수					
공간 활용계획 (35)	- 사업추진 시 전용 사무공간의 활용도	20점	20	18	16	14	12
	- 타 상주기업과의 협업 노력 및 의지	15점	15	13	11	9	7
센터참여도 (30)	- 성장지원센터 이용률(계획) * 신규 상주기업은 계획으로 평가	15점	15	13	11	9	7
	- 성장지원 프로그램 참석률(계획) * 신규 상주기업은 계획으로 평가	15점	15	13	11	9	7
사회적기업 진입가능성 (20)	- (예비)사회적기업 진입계획의 구체성 * 사회적기업의 경우, '지원 필요성'으로 평가	10점	10	8	6	4	2
	- 대표자의 (예비)사회적기업 진입 의지 * 사회적기업의 경우, '사회적기업 지속 의지'로 평가 * 진흥원 포털 필수강의 2강 이상 수료 시 8점 이상	10점	10	8	6	4	2
기대효과 (15)	- 공간지원을 통해 예상되는 기대효과	15점	15	13	11	9	7
<b>소 계(A)</b>							
<b>가·감점사항</b>		<b>배점</b>	<b>해당여부</b>				
가점사항 * 건당가점	- 사회적 가치 지표(Social Value Index) 측정	3점					
	- 지자체·공공기관 추천	2점					
감점사항 * 건당감점	- 경고 1회당(2점, 최대 4점)	2점					
	- 성과지표 등 진흥원이 요청하는 자료 비협조	3점					
<b>소 계(B)</b>							
<b>합 계(A+B)</b>							
평가의견							

※ 해당 양식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상주협약서

◦ 협약 당사자

(진 흥 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 장

(상주기업) 상 주 기 업 명 대 표

◦ 상주기간 : 2000년 0월 00일부터 2000년 0월 00일까지 (00개월)

◦ 상주공간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운영하는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상주에 관하여 진흥원과 상주기업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멤버십 운영 지침」(이하 “지침”)에 따라 상주기업으로 선정된 회원기업(이하 “상주기업”)의 안정적 사업 수행과 성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의무 및 전용 사무공간(이하 “상주공간”)의 사용 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주조건)** ① 상주기간은 본 협약서에 기재된 기간으로 하며, 상주기업은 지침 제24조에 따른 상주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자격을 상실하거나 멤버십 자격이 종료될 경우 본 협약은 즉시 해지된다.

② 상주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0일 이상 상주공간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진흥원장은 지침 제32조제2항에 따라 5일 이상의 서면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소명이 부적절하거나 미사용이 계속될 때에는 지침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경고를 부과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

- 제3조(상주공간 사용 및 관리)** ① 상주공간에는 전용 사무공간과 센터가 제공하는 공용시설·장비가 포함된다. 상주기업은 업무 목적 외 용도로 상주공간을 사용할 수 없으며, 진흥원장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공간 사용 권리를 양도·전대하거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 ② 상주기업이 업무상 시설 설치나 인테리어 공사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진흥원장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공사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상주기업이 부담한다.
- ③ 상주기업은 상주공간과 공용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장비를 손상한 경우 지침 제18조에 따라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
- ④ 상주기업은 상주공간 내에서 지침 제16조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진흥원장은 지침 제34조에 따라 경고를 부과하고, 경고가 3회 누적될 경우 지침 제35조에 따라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제4조 (상주기업의 의무)** 상주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계획의 충실한 이행
2. 지침·본 협약·센터 이용수칙·세부 관리기준의 숙지와 준수
3. 지침 제14조에 따른 성장지원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4. 지침 제21조에 따른 KPI 자료, 진흥원장이 요청하는 실적 관련 서류 제출
5. 센터 내 공동체 운영에 필요한 회의·안전훈련·환경정비 등 진흥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협조

**제5조 (금지사항 및 경고)** ① 상주기업은 지침 제16조에서 규정된 금지행위와 센터 이용수칙이 금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진흥원장은 상주기업이 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주기업이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지침 제34조에 따라 경고 1회를 부과한다.
- ③ 경고가 3회 누적되면 상주기업은 지침 제35조에 따라 퇴거 대상이 된다.

경고 통보 및 시정 요구 절차는 지침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조 (퇴거 및 이의신청)** ① 진흥원장은 상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침 제35조에 따라 본 협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지침 제34조에 따른 경고가 3회 누적된 경우
2. 지침 제29조에 따른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회원기업 자격이 상실된 경우(지침 제23조 또는 지침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
4. 국세·지방세 체납이 3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부도·파산 등으로 강제집행·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5. 지침 제16조를 위반하여 센터 운영 또는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6. 그 밖에 센터 운영상 퇴거가 필요하다고 진흥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지침 제35조제2항에 따라 진흥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회원기업 심의위원회를 소집해 퇴거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승인받을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진흥원장은 승인 즉시 상주기업에 퇴거 사유와 퇴거 예정일을 명시하여 퇴거 예정일 15일 전까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보하며, 상주기업은 지정된 날짜까지 센터에서 퇴거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상주기업은 퇴거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절차와 기한은 지침 제36조를 준용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퇴거명령의 효력은 새 퇴거 예정일이 통보될 때까지 정지된다.

⑤ 상주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짜까지 퇴거하지 않거나 지침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원상복구·물품 반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진흥원장은 무단 점유 해소와 원상복구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상주기업에 청구하고 잔류 물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 제7조 (전대차 동의서 발급 및 사업장 등록)** ① 진흥원장은 지침 제39조에 따라 상주기업이 센터 소재지를 사업장 주소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전대차 동의서를 발급한다. 동의서에는 상주공간의 주소, 사용기간 등 필수 사항을 명시한다.
- ② 전대차 계약(동의서)의 효력은 상주기업의 상주기간에 한하여 유효하며, 상주기업이 협약 종료 또는 지침 제35조에 따른 퇴거 등으로 상주공간 사용권한을 상실하는 즉시 종료된다.
- ③ 전대차 계약이 종료되거나 상주공간 사용이 종료된 상주기업은 지체 없이 관할 관청에 사업장 주소를 변경 신고하여야 하며, 이후 센터 주소를 사업장 주소로 사용할 수 없다.
- ④ 상주기업이 제③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진흥원장은 관계 법령과 지침에 따라 행정 조치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시설의 이용 및 관리)** ① 상주기업이 센터의 전용 사무공간 및 공용시설·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지침 제15조에 따라 진흥원장이 정한 방식으로 사전에 사용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시설·설비 이용시간은 원칙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되, 진흥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
- ③ 소모성 물품 교체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상주기업이 부담하되, 개별 사용량 산정이 곤란한 경우 진흥원장과 협의하여 부담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 제9조(시설물의 설치 및 구조변경)** ① 상주기업은 제공된 기본 칸막이·책상·의자 등 비치된 물품을 임의로 이동하거나 배치를 변경하여 타 기업의 공간 사용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 사전에 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 ② 상주기업이 업무상 추가 시설공사가 필요할 경우 사전에 진흥원장의 승인을 받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설치·공사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상주기업이 부담한다.

**제10조(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① 상주기업(그 임직원·방문객을 포함한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의 시설·장비가 손상되거나 인·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상주기업은 지침 제18조에 따라 해당 시설·장비를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상주기업은 퇴거 시 상주공간을 상주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하고, 자사 소유 물품을 모두 반출한 뒤 진흥원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 상주기업이 제①항 또는 제②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진흥원장은 직접 원상복구를 수행하고 이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상주기업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상주기업은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신고의무)** 상주기업은 부도·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폐업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진흥원장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보안 및 안전관리)** ① 상주기업은 센터의 보안 및 안전 관리를 위하여 진흥원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출입 인원을 개별 등록한다.

② 센터 출입은 등록된 상주기업 관계자로 제한한다.

③ 상주기업은 센터 내 화재·재난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진흥원장 및 관계 직원에게 알리고, 초기 대응과 대피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

④ 진흥원장은 작업 중 중대재해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분쟁해결 및 관할)** ①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진흥원장과 상주기업은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한다.

② 협약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제기될 때에는 진흥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적 관할 법원으로 한다.

③ 분쟁 해결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4조(기타) ① 상주기업이 본 협약을 위반할 경우 진흥원장은 관계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진흥원장이 관련 법령 또는 내부 규정을 제·개정하는 경우 이를 상주기업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보하며, 상주기업은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협약 변경이 필요할 때 부속 합의를 체결한다. 다만 기한 내 합의가 체결되지 않으면 변경된 규정 내용이 본 협약에 자동 반영된 것으로 본다.

③ 상주기업은 진흥원장이 요청하는 사업 실적·고용 현황 등 증빙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한다.

제15조(해석) ① 본 협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진흥원의 해석을 우선 적용한다.

② 본 협약서는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는 원본 2부를 작성하여 진흥원장과 상주기업이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진흥원)

(상주기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

(인)

대표

(인)